

2018.05.0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안내

1.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항

◇ 개정이유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물질의 성상, 유해·위험성 정보, 용도 등에 따라 해당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유통실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성분·함량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유해성 정보 등을 허위신고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시에도 건강·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면제하고,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며, 위해관리계획서 심사항목에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주민고지의 방법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개정내용

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제도를 신고제도로 개선(안 제9조 등)

- 1) 현행 화학물질 확인제도는 사업자가 화학물질(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전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등 규제물질의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성분명세서의 허위제출, 누락 등의 문제점이 있음

2018.05.09

2. 주요사항

- 2) 이에, 정부는 제조·수입업자가 5년마다 신고하는 화학물질별 성상, 유해정보, 용도 등에 따라 그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화학물질 정보체계에 등재·관리하고자 함
- 3) 아울러,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허위로 신고·제출할 우려가 있는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함유성분 정보, 유해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명함

나.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신고제 도입 (안제9조의2)

- 1)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한 자는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여 국내 업체에 화학물질 전 성분, 유해성 정보 등의 제공에 소극적임.
- 2) 이에, 국외제조자로 하여금 대리인을 선임하고 확인신고 등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허위 신고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화학물질 양도시 정보제공 의무화 (안제9조의3)

- 1) 제조·수입업자를 포함하여 화학물질을 다른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 유해·위험 정보 등을 작성·제공하도록 함
- 2) 화학물질 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사용자에게 대해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라.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안제10조제2항·제5항)

-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수출·입 및 국내 유통실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에게 화학물질 유통 관련 통계·정보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018.05.09

2. 주요사항

**마. 장외영향평가서 면제 및 변경 근거 신설
(안제23조제1항단서 및 제2항)**

- 1)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외영향평가서 변경제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극소량 취급시설 등에 대한 면제근거를 신설

바.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신설 (안제31조제2항)

- 1) 도·수급계약서 상 도급기간, 도급내용, 취급시설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사.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및 주민고지 항목의 확대
(안제41조 및 제42조)**

- 1)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중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고지방법을 1가지 이상에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8. . . (제 회)	

화 학 물 질 관 리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화학물질 확인제도는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물질이 등록대상물질·유독물질 등 규제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성분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 미제출율이 40%를 초과하고 거짓으로 제출하여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정보·수단이 미흡함.

이에 따라 정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제출하는 물질의 성상, 유해·위험성 정보, 용도 등에 따라 해당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화학물질 정보체계에 이를 등재·관리·공개함으로써 유통실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성분·함량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유해성 정보 등을 허위신고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시에도 건강·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면제하고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며, 위해관리계획서 심사항목에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주민고지의 방법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제도를 신고제도로 개선(안 제9조 등)

- 1) 현행 화학물질 확인제도는 사업자가 화학물질(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전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등 규제물질의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성분명세서의 허위제출, 누락 등의 문제점이 있음
- 2) 이에, 정부는 제조·수입업자가 5년마다 신고하는 화학물질별 성상, 유해정보, 용도 등에 따라 그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 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화학물질 정보체계에 등재·관리하고자 함
- 3) 아울러,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허위로 신고·제출할 우려가 있는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함유성분 정보, 유해정보 등의 자료제출을 명함

나.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신고제 도입(안제9조의2)

- 1)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한 자는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여 국내 업체에 화학물질 전 성분, 유해성 정보 등의 제공에 소극적임.
- 2) 이에, 국외제조자로 하여금 대리인을 선임하고 확인신고 등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허위 신고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화학물질 양도시 정보제공 의무화(안제9조의3)

- 1) 제조·수입업자를 포함하여 화학물질을 다른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 유해·위험 정보 등을 작성·제공하도록 함
- 2) 화학물질 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사용자에 대해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라.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제10조제2항·제5항)

-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수출·입 및 국내 유통실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에게 화학물질 유통 관련 통계·정보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장외영향평가서 면제 및 변경 근거 신설(안제23조제1항단서 및 제2항)

- 1)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외영향평가서 변경제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극소량 취급시설 등에 대한 면제근거를 신설

바.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신설(안제31조제2항)

- 1) 도·수급계약서 상 도급기간, 도급내용, 취급시설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사.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및 주민고지 항목의 확대(안제41조 및 제42조)

- 1)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중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을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고지방법을 1가지 이상에서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화학물질확인)”을 “(화학물질확인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자”로,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에 해당하는지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로, “그 내용”을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류된 유해·위험정보, 성상 등의 내용”으로, “제출”을 “신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신고한 사항 중 유해·위험정보, 용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이하 “화학물질확인

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이를 기재한 화학물질확인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확인신고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이 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부여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신고
2. 제9조의3에 따른 정보전달
3. 제10조에 따른 자료 제출
4. 그 밖에 화학물질확인 및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 받아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임된 자는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되었거나 선임 후 해임된 자는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하위사용자 등의 정보 제공) ① 화학물질을 다른 사람 또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정보,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정보 제공시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는 제공 대상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수립·시행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수립·시행
3. 화학물질의 수출·입 실태 및 국내 판매·이동·보관·사용 등 정보의 상시 파악·감시

제10조제3항 전단 중 “화학물질”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로, “정보체계”를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으로, “필요한 자료”를 “화학물질 통관 기록 등 필요한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각 기관 등에게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이용한 화학물질 통계·정보관리의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6항(중전의 제5항) 중 “방법”을 “방법 및 절차와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의 등재 대상(화학물질확인번호를 포함한다),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정보”를 “정보(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 제목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제한물질 수입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그 목적”을 “수입하려는 자가 그 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을 “받은”으로,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시설
3.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설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제23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장외영향평가서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로, “필요”를 “관하여 필요”로 한다.

제2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를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종별로”를 “사업장별로 제27조 각 호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밖의”를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3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기준 등의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35조제2항제6호 중 “아니”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취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계획

- 가.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나.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다. 화학사고 발생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제42조 제목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를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계획의 지역사회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을 “제41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를 작성·제출한”으로,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
를”을 “같은 조제1항제10의2호 각 목의 내용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을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41조제1항제10
호의2에 따른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화
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고지하고, 그 밖에”로, “방법으로”를
“방법으로 고지하여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화학물질확인”을 “화학물질확인신고를”로 하
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

6의2. 제23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자

6의3. 제23조의2에 따라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

제50조제1항제1호 중 “화학물질확인”을 “화학물질확인 신고”로 하

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
제5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
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자료가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2
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업무의 일부를”을 “업무 중 제52조에 의한 보호대상 자
료를 취급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하여”로 한다.

제5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제출한 자

제61조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임신고한 후에도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
임된 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1의2.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제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4조제1항제1호 중 “제출하지”를 “신고하지”로, “제출한 자”를 “신고한 자(제9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선임신고 또는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제2항·제5항·제6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0조, 제35조제2항제1호의2, 제49조제1항제1호·제1호의2, 제50조제1항제1호·제1호의2, 제52조, 제54조제5호, 제55조제2항, 제61조제1호·제1호의2, 제64조제1항제1호·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항, 제28조, 제41조제1항제10호의2, 제42조, 제49조제1항제6호의2·제6호의3, 제5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신고의 접수 및 제10조에 따른 화학물

질유통관리시스템에의 등재·관리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1. ~ 7.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제9조(화학물질확인신고) ① ----- 자-----</p> <p>----- 하나에 해당하는지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류된 유해·위험정보, 성상 등의 내용-- 신고-- 신고한 사항 중 유해·위험정보, 용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p> <p>② (현행과 같음)</p>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이하 “화학물질확인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이를 기재한 화학물질확인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확인신고 등) ① 국외

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
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
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사”
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이 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
하는 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
게 부여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신고

2. 제9조의3에 따른 정보전달

3. 제10조에 따른 자료 제출

4. 그 밖에 화학물질확인 및 정
보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국외제조사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 받아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임된 자는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로 본
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되었거나
선임 후 해임된 자는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하위사용자 등의 정보
제공) ① 화학물질을 다른 사람
또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화
학물질의 함유정보, 유해·위험
정보, 안전취급정보 등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
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
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
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하는 자는 정보 제공시 관
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된
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 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

자는 제공 대상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의 수립·시행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수립·시행
3. 화학물질의 수출·입 실태 및 국내 판매·이동·보관·사용 등 정보의 상시 파악·감시

③ -----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

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략)

<신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 화학물질 통관 기록 등 필요한 자료 -----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각 기관 등에게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이용한 화학물질 통계·정보관리의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
--- 방법 및 절차와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의 등재 대상(화학물질확인번호를 포함한다), 방법 --.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

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생략)

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1. -----
----- 정보(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번호를 포함한다)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제1항-----

-- 수입하려는 자가 그 목적--

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

③ ----- 받은 -----

받아야 한다.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시설

<신 설>

<신 설>

3.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설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제23조의 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한 경우

③ ----- 제1항 및 제2항-----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 제3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는 -----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관하여 필요-----.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 ⑤ (생략)

<신설>

⑥ (생략)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

----- 호에 해당하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장별로 제27조 각 호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여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략)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등)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 밖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 5. (생략)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 26. (생략)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②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기준 등의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6. -----
-----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제출-----

7. ~ 2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신설>

11. (생략)

② ~ ⑦ (생략)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

----- 자(취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계획

가.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나.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다. 화학사고 발생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11.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 계획의 지역사회 고지) ① 제41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 -- 같은 조제1항제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 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 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 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 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 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 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 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10의2호 각 목의 내용을 -----

 -----.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41조제 1항제10호의2에 따른 정보를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 보시스템에 등록·고지하고, 그 밖에 --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한 자

<신 설>

2. ~ 7. (생략)

② (생략)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신 설>

②·③ (생략)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

-----.

1. ----- 화학물질 확인 신고를 --

1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 4. (생략)
-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 6.·7. (생략)
- 8.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 9. ~ 13. (생략)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④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자료가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수수료)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 6.·7. (현행과 같음)
-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

- 9. ~ 13. (현행과 같음)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업무 중 제52조에 의한 보호대상 자료를 취급하는 업무를 제외
한 업무에 대하여 -----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신설>

7. ~ 12. (생략)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1. (생략)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

제59조(벌칙)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외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 12.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

-----.

1.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임 신고한 후에도 국외제조사에 의하여 선임된 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1의2.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의3. (현행 제1호와 같음)

2.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p>3. ~ 5. (생략)</p> <p>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u>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p> <p><u><신설></u></p> <p>2. ~ 11. (생략)</p> <p>②·③ (생략)</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62조(벌칙)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p> <p>4. (현행과 같음)</p> <p>제64조(과태료) ① ----- ----- -----.</p> <p>1. ----- ----- <u>신고하지</u> ----- ----- ----- <u>신고한 자(제9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도 포함한다)</u></p> <p><u>1의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선임신고 또는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u></p> <p>2. ~ 11.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화학안전과	
연 락 처	044-201-6831